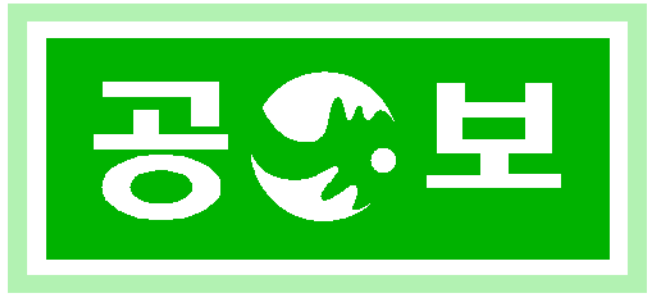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관	기 관 의 장



## 제 691 호 2011. 6. 2(목)

### 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70호[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..... 2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72호[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] ..... 6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82호[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] ..... 8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83호[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0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86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1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89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3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93호[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 15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70호

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
규칙안 입법예고**

**Ⅰ 개정 이유**

-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해줌으로써 평생학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.
-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 확산으로 학습을 통한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함.

**Ⅱ 주요 내용**

- 수강료 감면 대상 및 비율 개정(안 제16조)

□ 의견 제출

○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6.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평생교육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서헌 사항은 평생교육과 (전화 052-219-7572, 팩스 052-219-7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신청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□ 기타사항

○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별표 2]

**수강료 감면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**

구 분	내 상	비고
면 제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 3)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	
50% 감면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	
20% 감면	3) <u>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중 복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자</u>	
그비서류	1) 수강료 감면 신청서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- 국민기초생활수급지 증명서 - 장애인증명서 - 주민등록증 -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 ※ <u>중복 감면시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</u>	

**[붙임 2] 신규 조문 대비표**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<p>제16조(수강료의 감면) 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별표 2의 수강료 감면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<b>별표2</b></p> <p><b>수강료 감면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 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민세</td> <td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50% 감면</td> <td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구비서류</td> <td>1) 수강료 감면 신청서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- 주민등록증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신청기간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민세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	50% 감면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	구비서류	1) 수강료 감면 신청서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- 주민등록증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신청기간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	<p><b>별표2</b></p> <p><b>수강료 감면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 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민세</td> <td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 3) 국가유공자등의 유족지역에관한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(신할)</td> </tr> <tr> <td>50% 감면</td> <td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20% 감면</td> <td>온선생복지상이 발행된 자원봉사자 등을 소지한 자 중 주민등록상 온선생부에 거주하는 자(신할)</td> </tr> <tr> <td>구비서류</td> <td>1) 수강료 감면 신청서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증명서 - 주민등록증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 ※ 중복 감면시 주민등록의 2개 이상인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(신할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민세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 3) 국가유공자등의 유족지역에관한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(신할)	50% 감면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	20% 감면	온선생복지상이 발행된 자원봉사자 등을 소지한 자 중 주민등록상 온선생부에 거주하는 자(신할)	구비서류	1) 수강료 감면 신청서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증명서 - 주민등록증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 ※ 중복 감면시 주민등록의 2개 이상인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(신할)
구분	대 상																		
민세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																		
50% 감면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	1) 수강료 감면 신청서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- 주민등록증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신청기간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																		
구분	대 상																		
민세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 3) 국가유공자등의 유족지역에관한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(신할)																		
50% 감면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																		
20% 감면	온선생복지상이 발행된 자원봉사자 등을 소지한 자 중 주민등록상 온선생부에 거주하는 자(신할)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	1) 수강료 감면 신청서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증명서 - 주민등록증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 ※ 중복 감면시 주민등록의 2개 이상인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(신할)														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72호

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**□ 개정 이유**

- 제3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외계층의 학습자에게 수업료 감면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.
-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 확산으로 학습을 통한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한.

**□ 주요 내용**

- 제3대학 수업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 2)

**□ 의견 제출**

○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6.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평생교육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(전화 052-219-7572, 팩스 052-219-7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이부와 그 이유)
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**□ 기타사항**

○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82호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\_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\_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-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확산으로 학습을 통한 나눔 활성화
- 문화예술회관 이미지 제고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활성화

**2. 주요내용**

-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(인 제13조의 3)
  - ⇒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중 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: 수강료의 20% 감면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문화홍보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과(전화 052-219-7400, FAX 052-219-740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- 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4. 기타

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383호

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**1. 개정취지**

-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중 소지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료를 감면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「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대회의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그 비율 추가
  - 자원봉사자중 소지자에게는 대회의실 사용료의 100분의 20감면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(참조 : 시설재난관리과장)에게 전화·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전화 : 052-219-7652, FAX : 052-219-7659)

-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관·민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**4. 기타**

입법예고인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여고기간 놓인 공시합니다.

**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86호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**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-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,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,
-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, 사무국장 실비보상, 직무 교육 이수 규정 신설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-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“동사무소”를 “동주민센터”로 개정
-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내상을 국가유공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까지 확대
- 현행 조례에 없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을 신설
-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“25인 이내”에서 “30인 이내”하고, 주민자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“간사”의 명칭을 “사무국장”으로 개정
-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성 보장을 위해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
-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1회 이상 직무교육 규정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전화·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219-7233, FAX 219-723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 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의 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총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89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1. 개정 이유

-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실시로 자원봉사활동 관심유도와 참여분위기 활성화
-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규정 마련

2. 주요 내용

-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조항에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(안 제6조제4항제8호)
  -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(북구 주민에 한함)

3. 의견 제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6.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교통행정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(전화 052-219-7460, 팩스 052-219-747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-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기타사항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 - 393호

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**1. 개정이유**

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강습료 및 일일입장료의 100분의 20 감면(안 제10조 제1항 별표3)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시설재난관리과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657, FAX 219-7660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**4. 기다**

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